

## 생계부양형태에 따른 가구특성과 빈곤실태: 일인생계부양가구와 이인생계부양가구의 비교

윤 홍 식(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조 막 래(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본 논문은 2005년 조사된 한국복지패널 1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여 생계부양형태에 따른 일인생계부양가구와 이인생계부양가구- 가구특성과 빈곤실태를 비교분석함으로써 최근 이인생계부양형태로의 전환과정에 있는 한국사회에 정책적 대응방안을 모색한 것이다.

전후 서구 복지국가는 남성생계부양자가 노동시장에서 직면하게 되는 질병, 실업, 노령 등의 사회적 위험에 대한 대응을 제도화한 반면 여성은 가족 구성원에 대한 보살핌의 제공자로서 상정되었다. 표면적으로 이러한 성별분업에 근거한 복지국가는 지난 수십 년 간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온 듯하다. 설령 일부 또는 다수의 여성이 노동시장에 참여한다고 해도 일부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여성은 가구의 보조적 생계부양자로 간주되었으며, 여전히 가족 내 돌봄의 주요한 담당자로 간주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전통적 복지국가는 남성 임금의 상대적 감소, 저출산과 고령화, 노동시장의 유연화, 빈곤과 불평등 등 후기산업사회로의 이전과정에서 시민들이 직면하는 사회적 위험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함으로써 그 역할에 대한 근본적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즉, 사적인 문제로 간주되던 가족 내 돌봄 등의 과제가 새로운 사회적 문제의 하나로 등장하면서, 공적영역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에 대한 대응을 제도화한 복지국가의 근본적인 재편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서구복지국가의 가장 큰 전환이라고 일컬어지는 “점증하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음이 논증되고 있다 (Crompton 1999, Smith 2001 재인용; Esping-Andersen, 2002).

실제로 서구사회에서 1970년대 이후 증대되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로 인해 이인생계부양자에 대한 대중과 문화적 기대가 확산되어가고 있었다(Bergqvist and Jungar, 2000). 특히 북유럽 사민주의 국가들은 남성생계부양자 가구에서 이인생계부양자 가구로

의 전환을 매우 중요한 사회적 변화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갔다 (Bergqvist and Nyberg, 2002; Timonen, 2004). 즉, 일인생계부양자에서 이인생계부양자로의 이행은 복지국가가 대응해야 할 사회적 위험이 단순히 공적영역인 노동시장에서 발생하는 질병, 실업, 노령 등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소위 사적영역이라고 간주되는 가족 내에서 발생하는 임신, 출산, 양육에 대한 사회적 위험에 대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사회도 지난 20여 년간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전통적 남성생계부양자 사회에서 이인생계부양자 사회로 이전되고 있는 현상들이 목격되고 있다<sup>1)</sup>(통계청, 각 년도). 이러한 변화는 복지국가의 초입에 있는 한국사회에 두 가지 중요한 정책적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첫째는 서구복지국가와 같이 한국사회에서도 사적영역에서 발생하는 임신, 출산, 양육이라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한 대응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는 노동시장의 유연화로 인해 비정규직이 양산되면서 새로운 빈곤층이 증가했고, 이러한 변화로 인해 상용직 노동자를 근간으로 제도화된 사회안전망에 심각한 균열현상이 목격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가구주가 전일제로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여성가구주 가구의 55.0%가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에도 미치지 못하는 절대빈곤층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최저생계비 120%이하의 차상위 빈곤층을 포함하면 무려 72.5%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윤홍식·김혜영·이은주 2005).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논문은 한국복지패널조사 1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여 한국사회에서 이인생계부양자 가구의 특성과 빈곤실태를 전통적 남성 일인생계부양자 가구와 비교함으로써 이인생계부양자 가구로의 전환에 따른 한국사회의 정책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n=1,065).

한국뿐만 아니라 서구 국가에서는 이미 이인생계부양자 가구로의 전환 또는 성취단계로 표현되어 지고 있으나 실상 이인생계부양자모형에 대한 합의된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인생계부양자 가구의 대가 복지국가 재편의 핵심적 기저라는데 동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인생계부양자가 가구에 대한 합의된 정의가 없다는 것은 역설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이인생계부양자’라는 개념을 둘러싼 다양한 쟁점이 제기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노동시간을 준거로 하여 생계부양형태를 전통모형과 비전통모형으로 구분하였다. 생계부양형태는 배타적이고 분절적인 유형이라기보다는 남성생계부양자가구와 여성생계부양자가구라는 화살표의 연속선상에 놓여 있다고 보아야한다. 다만 분석의

1) 가계조사자료를 이용한 분석에 따르면 임금소득자 가구 중 전통적 생계부양가구(남성일인생계부양자 가구)의 비중은 1999년 79.3%에서 2004년 50.6%로 불과 5년 만에 36.2%나 감소했다<sup>1)</sup>(윤홍식·조막래·윤성호, 2006). 반면 부부 모두 임금노동에 종사하는 비전통생계부양자 가구(이인생계부양자 가구)는 동 기간 동안 20.7%에서 49.4%로 무려 138.6%나 증가했다.

편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여성이 임금노동에 참여하는 가구의 생계부양형태를 비전통 모형으로, 임금노동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를 전통모형으로 분류하여 비교·분석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빈곤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 【모형 가】를 살펴보면, 18세 미만 자녀수, 가구원의 근로소득, 이전소득, 가구부양형태가 빈곤지위결정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8세 미만 자녀수가 한명 증가 할 때 마다 빈곤에 처할 가능성은 약 8.4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2.130, p<.001$ ). 이는 자녀 양육 및 교육 등 부양부담이 가구의 소득수준과 부정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로, 소득관련 변수들과 빈곤지위 결정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근로소득이 1만원 증가할 때 빈곤에 처할 가능성은 약 1.1%씩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b=-.011, p<.001$ ). 이전소득 역시 빈곤에 처할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사적이전소득이 1만원 증가할 때 빈곤에 처할 가능성은 1.5%씩 감소하고( $b=-.016, p<.001$ ), 공적이전 역시 1만원 증가할 때 빈곤에 처할 가능성이 0.8%씩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008, p<.001$ ). 세 번째로, 본 연구의 가장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인 가구의 부양형태와 빈곤지위 결정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비전통가구가 전통가구에 비해 빈곤에 처할 가능성이 약 4.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b=1.56, p<.01$ ). 이인생계부양가구가 빈곤에 처할 가능성이 낮을 것이라는 일반적 예상과 달리 오히려 이인생계부양자가구가 빈곤에 처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 주목된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언급했듯이 이인생계부양자가구들 간의 불평등이 일인생계부양자 가구보다 크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로 추정된다. 소득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곤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이인생계부양자 가구의 임금노동자들이 노동시장지위가 낮기 때문인 것이다. 더 나아가 최근 노동시장의 유연화로 비정규직이 양산되면서 근로빈곤층이 증가하고 있다는 연구결과에 비추어 볼 때, 이인생계부양가구의 상당수가 이러한 근로빈곤층일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이인생계부양자 가구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수반해야하는데 노동시장의 유연화로 인해 만들어지는 비정규직의 상당부분이 여성인력으로 채워지고 있다는 점은 왜 이인생계부양자가구의 빈곤율이 남성일인생계부양자가구보다 높은지를 설명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최저생계비의 120%인 차상위 빈곤 결정요인을 분석한 【모형 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8세 미만 자녀수, 거주지역(시군), 가구원의 근로소득, 이전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가구부양형태가 빈곤지위결정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가】와 비교했을 때 3가지 주요한 결과가 나타났는데 첫째는 18세 미만의 자녀수와 빈곤지위와의 관계가 모형 가에 비해 약화되었다. 【모형 가】에서는 자녀수가 1명 증가할 때 마다 빈곤에 처할 가능성이 8.42배가량 높아졌는데 차상위

빈곤지위를 결정하는 모형 나에서는 5.3배로 감소되었다. 아동수가 빈곤지위에 미치는 영향은 빈곤기준을 상향 조정할 때 감소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는 거주지역이 의미 있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시군지역에 거주 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빈곤에 처할 가능성이 약 7.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b=1.975, p<.05$ ). 이것은 일자리의 대도시 편중현상과 지역간 산업불균형 현상으로 대표되는 한국사회의 지역간 격차가 차 상위 빈곤지위 결정과도 무관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결과인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는 생계부양형태와 가구의 빈곤지위와의 관계가 더욱 강해졌다는 점이다. 비전통가구가 전통 가구에 비해 빈곤에 처할 가능성이 약 18.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b=2.922, p<.001$ ). 【모형 가】와 비교했을 때 무려 3.9배나 증가했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언급했듯이 이인생계부양자 가구의 경제적 지위가 일인생계부양자 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극단에 몰려 있다는 추정이 가능하게 하는 결과이다. 최근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염두에 둔다면 한국의 비전통적인 이인생계부양자모형은 서구와 달리 동질적인 중산층 중심의 집단이 아니라 저소득층과 중산층으로 이분화된 구조를 갖은 것으로 추정된다. 즉, 이러한 한국 이인생계부양자가구의 특성으로 인해 서구와 달리 이인생계부양자 가구의 구성이 탈빈곤과 연계될 가능성이 낮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생계부양형태 별 빈곤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통모형의 두 모형(【모형 다】 , 【모형 라】)에서 가구의 빈곤지위 결정은 18세 미만 자녀수, 소득관련 변수들이 공통적으로 빈곤에 처할 가능성을 유의미하게 감소시키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절대빈곤선을 기준으로 할 경우(【모형 다】) 노인에 대한 부양부담이 빈곤에 처할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차상위 빈곤선을 기준으로 하였을 경우(【모형 라】)에는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노인에 대한 부양부담은 전통적 생계부양가구 중 절대빈곤층의 경제적 지위 결정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차상위 빈곤선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 지역 규모가 가구의 빈곤지위 결정과 유의미한 결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요한 점은 향후 왜 광역시와 시군거주자가 읍면 거주자에 비해 빈곤에 처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는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한편, 전통모형(【모형 다】 , 【모형 라】)과 비전통모형(【모형 마】)의 가장 큰 차이는 전통모형의 경우 가구 내 돌봄 관련 문제(18세 자녀수 및 노인부양부담)와 거주지역이 빈곤지위 결정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었다면, 그와는 달리 비전통모형의 경우 돌봄 관련 문제가 아니라 가구 내 소득관련 변수들만이(근로소득, 사적이전소득) 빈곤지위 결정에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는 각각의 생계부양형태별 정책대응이 달라야함을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비전통모형의 경우 노동시장 지위개선과 관련된 정책적 대안마련과 더불어 가족 간의 경제적 유대가 약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사적 이전이 아닌 공적이전을 통해 빈곤에 처할

가능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여러 가지 한계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에서 이인생계부양자 가구의 특성과 빈곤실태를 전통적 남성 일인생계부양자 가구와 비교분석하여 두 가지 주목할 만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는 서구 복지국가의 경험, 우리의 일반적 통념과 달리 비전통모형인 이인생계부양자 가구가 빈곤에 처할 가능성이 전통적 남성생계부양자 가구 보다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더욱이 빈곤기준을 최저생계비 100%에서 120%로 상향 조정했을 때 일인생계부양자 가구에 비해 이인생계부양자 가구가 빈곤에 처할 가능성이 4.7배에서 18.6배로 급증한 것은 예상 밖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에 근거했을 때 한국사회에서 단순히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통한 이인생계부양자 가구로 전환이 시민의 삶의 질은 증대시킬 것이라는 기대는 매우 위험한 생각인 것으로 판단된다. 앞서 OECD 국가들의 이인생계부양자 가구 비율을 통한 논의에서 보았듯이 자유주의 국가들의 경우 이인생계부양자 가구의 비율은 높지만 여전히 빈곤, 성별, 계층별 불평등은 여전히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통한 이인생계부양자가구의 증대가 한국사회가 직면한 불평등, 저출산, 고령화 등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완화하는 필요조건은 될지 몰라도 충분조건은 아니라는 점이다.

둘째는 빈곤율의 절대수치를 보면 비전통모형의 빈곤율은 전통모델의 68.5% 수준인 6.3%에 그치고 있다. 빈곤율을 통해 나타난 모습은 일인생계부양자가구의 빈곤 문제가 이인생계부양자 가구 보다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빈곤 지위 결정에 있어 이인생계부양자 가구는 일인생계부양자 가구에 비해 빈곤에 처할 가능성이 월등하게 높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는 비전통모형인 이인생계부양자 가구간의 소득불평등 수준이 일인생계부양자 가구보다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이인생계부양자 가구의 상층 집단은 일인생계부양자 가구 보다 높은 소득수준을 영위하고 있지만 하층 집단은 부부 모두가 노동시장에 참여함에도 불구하고 일인생계부양자 가구 보다 경제적으로 곤란을 겪는다는 추정이 가능한 것이다. 결국 이러한 문제는 최근 급격한 노동시장의 유연화로 인한 비정규직의 확대와 맞물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새로운 일자리의 대부분은 비정규직이고 이러한 일자리의 대부분을 여성이 담당함으로써 서구, 특히 북유럽 복지국가와 달리 이인생계부양자 가구의 확대가 빈곤감소와 바로 맞닿아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증가하고 있지만 노동시장의 분절화, 주변화로 여성 직업이 계토화되고 있는 현상이 목격되고 있기 때문이다 (강이수·신경아, 2001; 김영란, 1998). 즉, 단순히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성이 좋은 일자리에 참여할 때 서구 복지국가와 같이 이인생계부양자 가구로의 전환이 한국사회가 직면한 주요한 사회적 과제에 대한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가 현상적으로 서구사회와 같이 이인생계부양자 가구가 확대되고 있는 한국사회에 전달하는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인생계부양자 가구의 확대는 한국사회가 직면한 주요한 사회문제를 완화하는 충분조건은 아니지만 반드시 필요한 전제라는데 이론의 여지가 없다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증대를 위한 지속적인 정책노력이 수반되어야한다. 또한 한국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여성의 높은 노동시장 참여율을 동반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McKinsey and Company 2001; 최숙희·김정우, 2006). 결국 이인생계부양자 가구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에 결정적 장애가 되고 있는 가족 내 돌봄 노동의 사회화가 절실하다. 이는 단순히 한두 가지 정책적 대안을 제도화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돌봄과 관련된 전반적 사회서비스 정책을 전방위적으로 제도화가 필요하다. 둘째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에 장애가 되는 주요한 장벽들이 제거된다고 해도 노동시장에서의 좋은 일자리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자유주의 국가들과 같이 이인생계부양자 가구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지만 주요한 사회문제는 여전히 광범위하게 남아있게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노동시장에서 여성들이 일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decent job)를 만들어야한다. 물론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안은 매우 논쟁적일 수 있으나 한국의 대안은 분명하다. 좋은 일자리 창출을 통해 노동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도화하고, 좋은 일자리가 요구하는 노동자에 대한 높은 수준의 인적자본 수준을 확보하기 위해 노동인력에 대한 적극적인 활성화 정책이 수반되어야한다. 즉, 돌봄의 사회화, 노동인력에 대한 적극적인 활성화 정책을 통한 인적자본의 상승, 공적부분의 좋은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이인생계부양자 가구로의 전환이 이루어진다면, 이인생계부양자 가구의 확대는 현재 한국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풀어가는 유력한 대안이 될 것임에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